

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994년 4월 1일

사회산업 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3월 23일 남구청장
- 나. 회부 일자 : 1994년 3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 일자 :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(1994년 4월 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과장 황경조)

가. 제안 이유

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돋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
자녀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지에 따라 중학생 및 실업계
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
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안 제3조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에 있어 특별 장학금, 일반 장학금으로
만 구분 지급하던 것을 중학생,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 순에 의하고
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 성적 100분의 20이내 등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
확대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전영수)

남구 관내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돋기 위하여 제정된 남구 조례로
서 현행 조례는 특별 장학금은 학급 성적이 100분의 20이내 학생과 일반장학금
은 학급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학생으로 국한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
가 좁았으며, 개정조례안은 중학생,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학급
성적 100분의 20이내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 개정되었으므
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, 답변 요지

질의위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김한민 위원	사회과장 황경조	통장자녀중에서 공납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제외 하는 내용이 있는지?	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함.
최진동 위원	"	장학금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으며,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, 연간 지급하 는 금액은?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?	장학금 조성은 일반예산에서 전 입받고 있으며, 91년부터 금년 까지 연 8천만원씩 3억2천만원 조성되어 있음. 제일투자신탁 에 예치함. 연간 약 5천만원 이자 발생되고 있으며, 작년 86명에게 2천7백 만원 지급하였음. 향후 100명 이상 지원 예상함.
허성준 위원	"	장학금 관리에 따른 특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?	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음.

질의위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김한민 위원	사회산업국장 이영환	동에서 조성하고 있는 장학금도 본 조례에 내용 을 삽입할 수 없는지?	구에서는 예산으로 기금조성 운영하지만 동에서의 재원은 민간 독지가들의 재원이므로 성격상 차이가 있음.
이수송 위원	사회과장 황경조	안 제3조 제2항의 성적순 이라 함은 신청접수한 순 인가?	신청접수한 순임. 종전에는 성적기준을 정하였으나 저소득 주민의 여건이 거의 열악하므로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		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?	금년에 조사한 결과 조사된 학 생이 총 1,764명, 이 중 학비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이 1,448명 이며, 316명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. 금년에 예산의 범위내에 이 중 100명 정도 지원하고자 함.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